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18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의자 : 박성훈 · 이현승 · 박충권

김성원 · 김기현 · 이상휘

이인선 · 김기웅 · 곽규택

고동진 · 추경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함.

이에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과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5의3.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법인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3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
분증권의 배당소득

5의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영 또는 음수(陰數)인 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
당소득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5호의4에 따른 배당소
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 제5
호의3 및 제5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
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o)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u></p>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
이 100분의 35 이상인 법인으
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
소득

<신 설>

5의3.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
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법인
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
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3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
의 배당소득

<신 설>

5.의4.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
기순이익이 영 또는 음수(陰
數)인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
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
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
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

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 9. (생 략)

④ ~ ⑥ (생 략)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생 략)

<신 설>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4조제3항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5호의4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

